

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부운영위원회 규정

제정 2005. 3. 4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학부장회의규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학부운영위원회(이하 “학부운영위원회”라 한다)의 설치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각 학부(이하“학부”라 한다)의 발전적인 조직 운영 및 학사 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사전 심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학부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사전 심의한다.

1. 학부장회 안건의 검토 및 대책 협의
2. 전공간의 업무조정
3. 기타 학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학부운영위원회는 학부장과 전임 교원 중에서 학부장이 각 전공주임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학부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② 학부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학부장,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된다.

제4조(의장 등의 직무) ① 의장은 회무를 장리하고 학부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회의)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간사) ① 학부운영위원회 간사는 학부 행정실 주무자가 된다.

② 간사는 회무에 관하여 의장을 보좌한다.

부칙(제65호, 2005.3.4.)

이 규정은 200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.